

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:화물터미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인천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:화물터미널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,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(☎440-3303), 남구청 도시재생과(☎880-448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07. 11. 19 .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사업시행지(변경없음) :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57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- 종 류 : 자동차정류장
 - 명 칭 : 화물터미널
3.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규모
 - 면 적 : 45,985.1㎡(변경없음)
 - 건축연면적
 - 기 정 : 18,080.12㎡
 - 변 경 : 31,544.71㎡(증 13,464.59㎡)
 - ※ 변경사유 : 1동3층 증축, 5·6·7·8동 철거, 9동(세차장) 신축, 10·11동 신축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- 주 소 :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57번지
 - 성 명 : (주)에이치제이물류 대표 구자영
5. 사업기간
 - 착수예정일 : 2007. 11(실시계획변경인가 후)
 - 준공예정일 : 2008. 10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생략
7.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생략